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4나160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4나1605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2 선고 2022가단512936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24. 7. 3.

판결선고 2024. 8. 2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2. 선고 2022가단5129367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 사이에 인천 강화군 C 지상 일반 철골 구조 기타 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96.8㎡에 관하여 2021. 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2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항소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박대준, 판사 염기창, 판사 한속희